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체계 구축 및 구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 상위법령에 맞춘 평생학습협의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조~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수료증 발급 신설(안 제19조의2)

○ 조문 체계 간결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20조)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YDP미래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체계 구축 및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함.
- 안 제2장을 신설하여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평생교육 이용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평생교육이용권은 현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국가(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 한도 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임.

그래서 본 조례안은 현행법상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평생교육이용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업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본 개정 조례안은 비록 법률 개정 이전부터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나 급부행정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사무의 경우라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법령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에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방법, 지원의 내용 등을 국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조례 개정이 가능함.

그러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법의 시행일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장은 YDP미래평생학습관(도신로4길 20) 개관에 맞추어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규정임.
- 안 제13조제2항에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에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상위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의2까지 수강료 및 수강료의 면제, 반환, 수료증의 발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평생교육이용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2021. 6. 8.개정, 2021.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업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일에 맞추고자 수정함.

나. 수정내용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2021년 6월 일
제안자: 최봉희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평생교육이용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2021. 6. 8.개정, 2021.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업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일에 맞추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u> <u>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5조”를 “「평생교육법」”으로,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평생학습의 진흥)”을 “(평생교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을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를 “평생교육”으로,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의”를 “평생교육의”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을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으로, “학습경비”를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로 한다.

제4조의2앞에 “제2장 평생교육이용권”을 삽입한다.

제2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를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5조 중 “평생학습의”을 “평생교육의”로, “심의하기”를 “협의·조정하기”로,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한다”를 “협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평생학습”을 각각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의장 1명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을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의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을 “구 평생교육 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등포구와”를 “구와”로,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을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를 “평생교육 진흥을 위

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촉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의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를 “**의장이 부득이**”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6.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 제목 “(운영요원 등)”을 “(평생교육사의 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을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지정·이용”을 “지정”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인문해교육”을 “제5장 성인문해교육”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성인문해교육 실시 등)”을 “(문자해득교육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2조 중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를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기준(제17조 관련)

운영과정	수강료 (프로그램당)	비고
13주 이상	100,000원 이하	○ 주1회 2시간 기준 ○ 주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프로그램은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12주 이하 ~ 9주 이상	60,000원 이하	
8주 이하	20,000원 이하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대 상
면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구비 서류	1) 감면대상자의 해당증명서 및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 분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 병역명문가증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3]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반환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강좌 수강료	1.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u> <u>진흥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생교육법</u>」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 <u>평생학습</u>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평생학습</u>”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p> <p>2. “<u>평생교육사</u>”란 「<u>평생교육법</u>」(이하“<u>법</u>”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p> <p>3. “<u>성인문해교육</u>”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u> <u>진흥 조례</u></p> <p>제1조(목적) ----- 「<u>평생교육법</u>」----- -- <u>평생교육</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평생교육이용권</u>”(이하 “<u>이용권</u>”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p> <p>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평생교육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무교육수준의 기초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

-----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 ② ----- 평생교육 -----
-----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

- ③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
----- 평생교육의 -----

- ④ ----- 평생교육-----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
-----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평생교육이용권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 설>

<신 설>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
이 가능한 자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
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
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
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채금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 평생교육의 -----

----- 협의·조정하기 -----
----- 평생교육협의회 -----
-----.

제6조(기능) -----
-----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
2. 평생교육 -----
3. 평생교육 -----
4. (현행과 같음)
5. ----- 평생교육 -----

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 소관 국장
3. 영등포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구성) ① ----- 의장 1명과 부의장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

③ -----

의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 구 평생교육 담당 -----
3. 구와 -----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
4.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생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 담당 부서
장-----.

제9조(해촉) 의장-----

----- 해촉-----.

1. (현행과 같음)
2. ----- 해촉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
-----.

② 의장이 부득이-----

----- 부의장-----
-----.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 ⑤ (생략)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

-----.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6.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신 설>

제15조(운영요원 등) ① (생 략)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
·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
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
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
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
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진흥사업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
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6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

----- 평생교육 -----
-- 지정-----.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
은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5.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수강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자 본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성인문해교육

제20조(성인문해교육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성인문해교육

제20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 2.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 및 지원

③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중전 제 17조에서 이동]

제5장 보칙

제21조(협력 및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협력 및 협조 등) ① -----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감독) -----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 -----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44 호
----------	---------

제출연월일: 2021. 6.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관 운영 체계 구축 및 구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2)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전체 통일하여 정비

나. 평생교육이용권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 1) 평생교육이용권 정의 신설
- 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 및 방법, 발급 범위, 관리 조항 신설

다. 상위법령에 맞춘 평생학습협의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5조~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1)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
- 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단서 신설

라.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 수강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체화

마. 수료증 발급 신설(안 제19조의2)

바. 조문 체계의 간결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20조)

1)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 수정 및 삭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동일 내용 수정 및 삭제

사.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5. 6. ~ 5. 26./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5조”를 “「평생교육법」”으로,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평생학습의 진흥)”을 “(평생교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을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를 “평생교육”으로,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의”를 “평생교육의”로 하며, 같은 조 제4

항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을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으로, “학습경비”를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로 한다.

제4조의2앞에 “제2장 평생교육이용권”을 삽입한다.

제2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를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5조 중 “평생학습의”을 “평생교육의”로, “심의하기”를 “협의·조정하기”로,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한다”를 “협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평생학습”을 각각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의장 1명과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장”을 “의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의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을 “구 평생교육 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등포구와”를 “구와”로,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을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를 “평생교육 진흥을 위

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촉해제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의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를 “**의장이 부득이**”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6.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 제목 “(운영요원 등)”을 “(평생교육사의 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을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지정·이용”을 “지정”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인문해교육”을 “제5장 성인문해교육”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성인문해교육 실시 등)”을 “(문자해득교육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2조 중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를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기준(제17조 관련)

운영과정	수강료 (프로그램당)	비고
13주 이상	100,000원 이하	○ 주1회 2시간 기준 ○ 주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프로그램은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12주 이하 ~ 9주 이상	60,000원 이하	
8주 이하	20,000원 이하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대 상
면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구비 서류	1) 감면대상자의 해당증명서 및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의사상자 증서 또는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 병역명문가증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3]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반환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 고	
강좌 수강료	1.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3.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u> <u>진흥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생교육법</u>」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 <u>평생학습</u>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평생학습</u>”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p> <p>2. “<u>평생교육사</u>”란 「<u>평생교육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p> <p>3. “<u>성인문해교육</u>”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u> <u>진흥 조례</u></p> <p>제1조(목적) ----- 「<u>평생교육법</u>」----- -- <u>평생교육</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평생교육이용권</u>”(이하 “<u>이용권</u>”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p> <p>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평생교육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무교육수준의 기초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

-----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 ② ----- 평생교육 -----
-----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

- ③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
----- 평생교육의 -----

- ④ ----- 평생교육-----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
-----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

-----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평생교육이용권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 설>

<신 설>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
이 가능한 자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
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
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판
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 평생교육의 -----

----- 협의·조정하기 -----
----- 평생교육협의회-----
-----.

제6조(기능) -----
-----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
2. 평생교육 -----
3. 평생교육 -----
4. (현행과 같음)
5. ----- 평생교육 -----

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 소관 국장
3. 영등포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구성) ① ----- 의장 1명과 부의장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

③ -----

의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 구 평생교육 담당 -----
3. 구와 -----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
4.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제9조(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생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 담당 부서
장-----.

제9조(해촉) 의장-----

----- 해촉-----.

1. (현행과 같음)
2. ----- 해촉을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
-----.

② 의장이 부득이-----

----- 부의장-----
-----.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 ⑤ (생략)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

-----.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6.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신 설>

제15조(운영요원 등) ① (생 략)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
·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
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
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
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
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진흥사업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
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6조-----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

----- 평생교육 -----
-- 지정-----.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
은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5.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수강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자 본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성인문해교육

제20조(성인문해교육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성인문해교육

제20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 및 지원

③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중전 제 17조에서 이동]

제5장 보칙

제21조(협력 및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협력 및 협조 등) ① -----

평생교육의 진흥과 평생교육-----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감독) ----- 평생교육경비와 이용권이 -----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